한국언론학보
2017년 61권 2호 7~36쪽
https://doi.org/10.20879/kjjcs.2017.61.2.001
http://www.comm.or.kr

헌법재판과 뉴스 프레이밍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후 보도 프레임 차이를 중심으로*

유용민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이 연구는 한국 언론이 사법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 사건을 어떻게 의미화함으로써 특정한 내러티브 틀로 재구성하는지 탐색하고, 언론의 프레이밍이 헌재 결정 전후로 어떠한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헌법적 사건에 대한 언론의 상징적 의미 생산의 내용과 효과를 내러티브 프레임 차원에서 밝히고, 사법적 과정에서 언론 보도의 구성 양상을 경험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헌법재판에 관한 언론의 저널리즘 실천이 갖는 함의를 토의해 보고자 했다. 연구자가 이러한 연구를 시도하는 배경에는 사법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 심화되고, 법치주의가 대두되는 최근의 사회정치적 상황이 놓여 있다. 분석 결과 언론은 헌법재판 이슈를 정파적 이념 대결 구도하에서 상호 적대하는 내러티브를 통해 상징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었고, 그러한 프레이밍 양상은 헌재 결정 후에 더욱 증폭, 강화되었다. 연구자는 이 연구 결과가 갖는 저널리즘적 함의를 사법과 법치에 대한 언론의 바람직한 공론장적 역할 측면에서 토의하고, 사법과 저널리즘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후속 논의를 위한 문제의식을 고찰해 보았다.

핵심어: 헌법재판, 틀짓기, 사법, 결정, 재판 보도

---

* 이 논문은 저자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발췌 · 재구성한 글입니다. 논문 완성도 향상에 도움을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수집과 정리에 힘써 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서지현, 김승연 석사과정께도 감사드립니다.

** eudemonia38@naver.com

1. 문제 제기

다양한 사법 영역 중에서도 헌법재판(constitutional adjudication)은 사법에 대한 언론 보도의 역할과 관련한 필수불가결한 분석 지점이다. 헌법재판은 각종 사회정치적 갈등에 대한 일종의 최종 심급으로 국가 기관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한다. 헌법재판은 정책적 의제 해결은 물론이고 때로 국민 일상 전반에 파급력을 미치는 법 규범(legal norm)을 확정하기도 한다. 경험적으로 헌법재판은 2000년대 중반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과 행정수도 이전 위헌 사례부터 정당 해산, 그리고 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사회 갈등과 분쟁 과정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그에 따라 학술 영역은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헌법재판의 기능과 역할을 둘러싼 논의 또한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와 관련, 사법 통계 집계 이후 법원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사건 처리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등 사법 제도의 역할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사법 그 자체에 관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사법적 의사 결정은 사법부 활동 그 자체로 영향력이 확장된다기보다, 언론 보도를 통해 공표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해 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 연구는 그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 법 규범을 생산하는 일차적인 주체는 법원임에도 법 규범의 사회적 확산에는 미디어와 정보 영역의 역할이 긴밀하게 개입된다는 점에서, 언론에 의한 사법 재현이나 매개의 과정 없이 법의 사회적 영향력을 완전히 설명하기도 어렵다. 미디어와 권력 관계 분석 측면에서도 사법과 언론의 관계는 중요한 분석 지점이지만, 권력 분석 또한 보통 미디어와 정치권력(political power) 측면에서 주로 검토돼 왔을 뿐이다.

이 연구는 언론이 헌법재판 사건을 보도하면서 발생하는 의미나 효과를 언론이 사회 현실을 상징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 관점에서 논의하려 한다. 헌재 결정은 일차적으로 헌법재판관의 평의로 산출된다. 그러나 그 결정의 의미와 효과는 2차적으로 언론의 선택적 · 주관적 · 의도적 현실 해석과 의미 구축 과정에서 국가 사법이 고려한 애초의 의도나 목적과는 상이한 의미와 효과를 갖는 담론으로 재구성되어 수용자들에게 전달된다. 더구나 헌법재판관들의 숙의(deliberation)에 해당되는 평의는 국민 알 권리와 사상의 자유 시장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1] 국민은 헌법재판에 관해 극히 제한

1) 헌재 서면심리와 내부 평의의 비공개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34조 1항을 참조.

된 정보만을 알 수 있다는 정보 제한의 문제도 크다. 이 상황에서 같은 사건, 같은 결정이라 해도 언론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수용자들에게 상이하게 전달되는 효과는 더욱 중요하다. 사법 시스템이나 제도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과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역할은 간과하기 어렵다(장수영 · 이덕환, 2015; Han & Dee, 1991; Drechsel, Nettebrug, & Aborisade, 1980; Baird & Gangl, 2006; Genn, 1999, p. 246; Gibson & Nelson, 2014; Penrod & Dexter, 1994).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사회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언론의 현실 해석과 의미 생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규명하고, 그 의미를 사법에 대한 언론 보도의 역할과 효과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국내 주요 신문 보도를 사례로 선정하여 언론의 보도 프레임이 어떠한 내러티브적 의미 요소들로 구성되고 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헌재 결정 전후로 구분되는 시기 요인에 따라 언론의 보도 프레임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자 했다.

2. 이론적 배경

1) 헌법재판과 언론 보도

재판 보도 분석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의의는 특별하다. 헌법재판이 갖는 사회정치적 기능과 역할은 법원 판결이나 사법부의 일상적 활동과는 차별화된다. 헌재는 국가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법 규범 중 가장 최상위에 있는 헌법 규범을 다스리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은 최근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할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들이 사법적 수단과 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현상을 뜻하는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2]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은 국가 정책과 공공 이슈는 물론이고 국민 일상 삶의 문제들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고 있다. 헌법재판은 사법 심

2) 이러한 정의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김종철, 2005; 박은정, 2010; Ferejohn, 2002; Hirschl, 2002, p. 224). 그러나 이 개념의 정의는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그에 관한 논의는 이 논문의 연구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생략한다.

사나 위헌 심판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입법과 행정 기능까지 대체 · 보완하고, 더 나아가 사회 통합이나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김승대, 2008; 김종철, 2006; 박종보, 2010).

헌재의 이러한 위상 부상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을 다루는 언론에 대한 분석과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헌법재판 이전에 재판과 법원에 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적인 지점들을 검토하는 학술적 논의 자체가 드문 실정이다. 일부 사례들은 법원이나 재판 판결과 관련된 이슈나 사안에 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하지만, 재판 관련 보도 분석을 갈등 보도의 차원에서 맥락화하거나 특정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검증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최선욱 · 유홍식, 2010; 김수정 · 정연구, 2010).

이에 반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언론의 역할 문제를 거시적으로 고찰하는 최근의 논의들(심석태, 2014a, 2014b; 이범준, 2014)은 헌법재판과 언론 보도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데에 의미 있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심석태(2014a)는 재판이나 법원에 대한 언론 비판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할 때 바람직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에는 지나친 사법 비판은 법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신평, 2010).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물리적인 증거를 놓고 진실을 다투는 일반 재판과는 달리 헌법재판은 추상적인 언어로 규정된 헌법을 검토하는 의사 결정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그로 인해 언론 입장에서도 객관 저널리즘(objective journalism)에 입각한 규범만으로 헌법재판 사건에 대응하는데 여기서 이론적 불편함이 발생한다. 헌법재판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만을 놓고 진실을 다투는 법정으로서의 성격만 갖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헌법재판 제도가 불가피하게 갖는 정치적 성격(장진호, 2015)으로 인해, 언론 보도 또한 헌법재판 사건을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로 조직된 내러티브(narrative)로 구성하기 쉽다. 헌법재판 사건들은 많은 경우 제도 정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 시스템으로 이월된 사안들이다. 그렇기에 헌법재판 과정은 자연적으로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공적 논쟁의 격화 과정과 중첩적으로 전개되기 쉽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행정수도 이전 위헌, 통진당 해산 사건 등 대표적인 헌법재판 사례들 모두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

헌법재판 사건에 해석적 의미를 구축하는 언론의 담론적 실천은 법 현실에 대한 해석을 이념적 대결 구도 안으로 포섭하는 정파적 담론 경쟁의 양상으로 전개되기 쉽다. 그간 한국 언론의 성격, 특히 엘리트 언론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규정해 온 정파성 혹은 정치 병행성(김동윤 · 김성해 · 유용민, 2013; 김영욱, 2011; 송은지 · 이건호, 2014; 송현주, 2015;

윤영철, 2000; 이재경, 2008)을 고려하면, 헌법재판 보도와 언론의 정파적 보도 관행은 더욱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더구나 헌법재판이라는 제도는 위헌 심사 기능과 같이 입법부 등 다른 권력 기관의 역할과 분리되는 고유한 권한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정치의 사법화 논의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정치가 수행하는 역할까지 행사하기 때문에(오승용, 2009; 채진원, 2011), 언론이 헌법재판의 이슈 공간을 정파적 보도의 맥락으로 끌어올 가능성은 크다.

이 구도 안에서 언론은 헌법재판의 권위나 정당성을 합리화 혹은 탈-합리화하기 위해, 일상적인 재판을 보도할 때 형식적으로나마 채택했던 객관 저널리즘이나 공정성 규범으로부터 일탈하기 쉽다. 이러한 개연성은 특히 헌법재판 이슈가 정치적 · 정파적 ·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때 더욱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2) 재판, 사법, 그리고 언론의 틀짓기

언론은 법원과 재판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공중에게 전달하기보다 현실 사법에 대한 이미지 · 상징 · 서사를 제공한다. 사법에 대한 미디어 재현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언론이 법원과 사법에 대한 잘못된 현실을 재현함으로써 사법 현실에 대한 공중의 왜곡된 인식을 지속시킨다고 지적한다. 솔버그와 월텐버그(Solberg & Waltenburg, 2015, p. 2)는 미국 사법 시스템이야말로 고도로 정치적인 제도지만 언론은 마치 법원이 비정치적인 제도인 것처럼 신화화(mythicization)해 왔다고 말한다. 제이미슨과 월드먼(Jamieson & Waldman, 2003, p. 1)은 법원에 대한 뉴스 스토리들이 사법에 대한 인공적 구성물임을 지적하고, 소로카(Soroka, 2012, p. 515)는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현실과 뉴스 속 현실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언론의 사법 재현은 크게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 한 방향은 언론이 사법의 권위와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상징적 토대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Boykoff & Boykoff, 2007; Davis, 1994, p. 128; Entman & Paletz, 1980; Gibson & Caldeira, 2001, p. 200; Jamieson & Waldman, 2003). 다른 한 방향은 언론이 법원과 사법의 정치적 성격과 이해관계를 폭로함으로써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공중에게 제공하고 그 결과 사법의 정당성과 권위가 비판받게 된다는 점이다(Davis, 2011, pp. 25-27). 이상의 논의들은 뉴스 수용자들에게 언론이 제공하는 사법에 대한 주된 해석적 틀(interpretative frame)이 곧 두 차원, 즉 사법은 고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시스템이라는 해석, 다른 하나는 사법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면서 오직 법률에 의거해 작동하는 공정한 시스템이라는

해석으로 대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법 현실에 대한 상이한 해석적 틀은 곧 사법의 정당성, 공신력, 권위에 대한 수용자들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사법 이슈에 대한 법률 정보나 의견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 정보나 복잡한 논증으로 조직된 의견들보다는 사법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나 내러티브로 조직된 이야기들이 수용자들로 하여금 복잡한 사법 사건의 전모와 총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쉽다. 깁슨, 로지, 그리고 우드슨(Gibson, Lodge, & Woodson, 2012)은 언론이 사법 이슈를 어떠한 이미지나 언어적 상징들을 활용해 재현하는지에 따라 법원과 사법에 대한 수용자 인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언론의 이러한 영향력은 프레이밍(framing) 개념을 통해 잘 설명된다. 언론은 뉴스 스토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여러 측면들 가운데 특정한 측면을 선택 · 강조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특정한 의미를 구성하는 프레임을 제공한다(Scheufele, 1999). 프레임 개념은 언론이 수행하는 저널리즘이 현실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고, 수용자들이 언론이 제시하는 현실에 대한 특정한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는 일련의 사회적 영향력을 설명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동원돼 왔다(Schudson, 2011).

뉴스 프레임은 사회 현실의 특정한 측면에 대한 언론의 선택 · 배제 · 강조가 반영된 인지 · 해석 · 재현의 양식으로서, 사람들의 상징적인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Gamson & Modigliani, 1987; Gitlin, 1980, pp. 6-7; Reese, Gandy, & Grant, 2001). 이러한 프레임 개념은 프레임에 대해 특정 이슈를 구성하는 여러 속성(attributes) 중에서 특정한 속성이 부각되거나 배제되는 현저성(salience) 측면으로 접근한다.

이에 반해 프레임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접근하는 시각에서 프레임은 언론에 의해 동원되는 다양한 수사 기법과 이야기 구성 방식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 · 결합되고, 그럼으로써 현실에 대한 총체적 의미를 이야기로 펼쳐 주는 기능과 효과 측면으로 이해된다(김경모 · 정은령, 2012; Johnson-Cartee, 2005; Gamson & Modigliani, 1987; van Dijk, 1988). 엔트먼(Entman, 1993)의 프레임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내러티브에는 사안에 대한 정의,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도덕적 책임 평가, 해결책 혹은 전망과 교훈에 관한 의미 요소들이 구조화되어 있다. 언론은 다양한 이야기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동일한 현실에 대한 상이한 내러티브를 창출한다. 내러티브로서의 프레임은 뉴스 수용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언론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나 의견들을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인지한다기보다 하나의 드라마, 내러티브, 스토리로 받

아들임으로써 사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기반을 두고 태도나 의견을 형성해 간다고 본다.

보도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를 생산하는 이야기 양식으로 구조화된 담론(Gamson & Modigliani, 1987; van Dijk, 1988)으로서의 내러티브 프레임은 수용자들로 하여금 더욱 문화적으로 친밀한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Ettema, 2005).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활용되는 대부분의 지식들이 이야기의 방식으로 꾸며져 있다는 점(Baumeister & Newman, 1994; Graesser & Ottati, 1995)에서 내러티브 프레임의 효과 또한 더 손쉽게 설명된다.

사법에 대한 보도 프레임 연구는 언론의 프레임 조직에 따라 사법에 대한 공신력 등 수용자 인식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미국 대법원의 미디어 정치화(politicalization)에 관한 존스(Jones, 2014)의 연구는 최근 미국 언론들이 사법부를 더 정치화된(politicalized) 존재로 프레이밍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법원 보도의 프레임을 연구한 선행 사례들은 법원이나 재판 판결 등 법원 활동이 언론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스필과 옥슬리(Spil & Oxley, 2003)는 미디어가 뉴스 내러티브 속에서 사법 제도와 사법부 활동을 비정치적인 존재로 특징짓는지 혹은 정치적인 제도로 그리는지, 법관들을 이데올로기적이고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사적 존재로 특징짓는지를 분석한다(p. 24). 존슨과 사커(Johnson & Socker, 2008)는 재판 이슈가 법리에 근거하여 다뤄지는지 혹은 정치적인 동기나 이유에 초점에 맞춰지는지를 대비시켜 법원 보도의 프레임을 고찰한다. 니콜론과 하워드(Nicholon & Howard, 2003)는 사법 쟁점에 대한 프레임 유형에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공중의 지지가 변화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으며, 베어드와 갱글(Baird & Gangl, 2006)은 언론이 법원의 의사 과정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따라서 법원의 절차적 공정성(fairness)에 관한 공중의 태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들에 따르면, 사법적 의사 결정을 정치적인 논쟁(political wrangling) 프레임으로 프레이밍할 경우, 공중은 법원의 의사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 미디어가 법원을 정치적 혹은 비정치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공적 확신이 감소 혹은 지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Davis, 1987),[3] 법원 이슈에 대한 보도 프레임을 법원과 사법이 정치적으로 작동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프레임(political-bases frame)과 법률 · 법리에

3) 루베르다(Luberda, 2008)는 미디어가 법원을 정치화된 존재로 보도해 가는 언론의 경향 때문에 사법에 대한 공적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지지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한다(p. 515).

의해 작동한다는 측면을 부각하는 프레임(legal-based frame)으로 구분하여 보기도 한다.

하지만 사법적 이슈나 논쟁에 대한 언론 보도 프레임은 단지 법리에 근거한 프레임과 정치적인 차원에 근거한 프레임으로 양분하기 어렵다. 언론 보도 프레임은 헌법적 분쟁에 관한 그보다 더 폭넓고 다양한 의미를 담은 이야기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프레이밍이 제공하는 내러티브를 단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그러한 프레이밍 내용과 관행이 사법과 언론 관계상 어떤 요인들에 의해 제약되는지를 이해하기에는 미흡함이 있다.

3) 법원 판결과 재판 보도

사법적 문제 해결 과정이 다른 공적 문제 해결 과정과 대비되는 특징은 합의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다음 기회로 넘기는 의회나 제도 정치 영역과 달리 법원 재판은 대부분의 경우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정에 회부된 갈등과 분쟁을 일단 매듭짓는 힘을 발휘한다는 점이다(Rosanvallon, 2008, p. 233). 그러나 사법의 이러한 기능이 사회 갈등이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거나, 실질적인 사회 통합을 이루는 효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은 판결을 내릴 때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혹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동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여론재판 혹은 언론에 의해 조성되는 여론의 법정 간에 갈등을 유발한다(Coffey, 2010). 여론의 법정에서는 한번 재판 받은 사안도 다시 비판받거나 공적 논쟁으로 불거질 수 있다. 법정에서는 엄격한 증거법과 법 규율이 작동하지만, 여론의 법정은 사상의 자유가 지배한다.

언론 입장에서 법원 판결의 정당성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사법 권력에 대한 제4부로서의 필수적인 역할이다. 사법부 입장에서 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사법부 판결의 권위와 정당성이 도전받는 문제를 지적한다. 그로 인해 법원 판결 이후 언론의 과도한 비판 보도는 자제되거나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속돼 왔다(신평, 2010). 언론의 사법 비판이 지나칠 경우, 보호받아야 할 다른 법익이 침해받는 문제도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과도한 사법 비판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런 논리라면 과도하게 사법을 편드는 언론 보도 행태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언론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사법에 대한 비판 보도는 폭넓게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정당하다. 더구나 사법부가 행사하는 법치의 정당성이나 권위가 여론 광장에서 폭넓게 토의될 필요가 있다면, 사법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는 제한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도 있다.

특히 언론이 법원 재판, 법 이론, 사법 제도나 정책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능력이 심각하게 결핍돼 있다는 지적(이범준, 2014)을 고려하면, 오히려 언론의 사법 비판 기능은 제대로 작동할 필요가 더 크다.

이상의 논쟁적 지점에 관한 기존 논의는 몇 가지 특성을 띤다. 우선 재판 이슈와 언론 보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학술 실천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재판 이슈나 사법 현실이 갖는 실재적 특성을 사법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제약하는 상황적 · 환경적 요인으로 주목하면서 재판 이슈를 다루는 언론 보도의 특정한 관행이나 양식을 설명하는 분석적 시도가 없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의 정치적 성격과 주류 언론의 정파적 성격을 고려하면, 언론의 헌법재판 보도는 헌재 결정 전후에 따라 차별적 관행 혹은 전략에 의해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언론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그 나름대로 객관 저널리즘이나 공정성 규범에 형식적인 수준에서나마 충실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은 한국 사회의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덮어놓고 사법적 문제 해결 과정이 작동하기 시작한 현실을 극단적으로 비판하거나 시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가 결정을 내린 이후에 언론의 보도 관행은 그러한 범위에서 일탈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 결정이 특히 정파적 이해관계와 동기에 맞물려 있을 때, 언론들은 헌재 결정 여하에 따라 분명한 찬성과 반대로 분열됨으로써, 사법부 결정에 대한 강한 정당화 혹은 탈정당화를 노골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할린(Hallin, 1986)의 지표화 가설(indexing hypothesis)을 참고하면, 사법적 의사 결정이 내려진 이후 언론의 보도 프레임은 자신들의 당파적 관점과 입장에 따라 사법 비판 혹은 사법 지지의 폭과 강도를 더욱 강화하는 보도 관행 내에서 제약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헌재 결정을 지지하는 언론과 반대하는 언론은 각각 해당 사안에 담긴 정치적 · 정파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지지하고 정당화하거나 혹은 비판하고 탈정당화하는 현실 해석에 몰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효과는 언론들이 해당 헌법재판 이슈에 담겨 있는 '정치적인 차원'의 의미나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더 주목하는 반면, '법리적 · 법률적 차원'의 의미나 요소들에는 덜 주목할 가능성에도 있다. 이를 통해 헌재 결정을 반대하는 언론은 해당 이슈를 '합법적 논쟁 영역' 내에 지속시키려 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전폭적 찬성과 극적 지지를 통해서 해당 헌법적 분쟁을 '논쟁의 영역'에서 '합의된 영역'으로 치환시키려는 담론적 시도를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와 추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에 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은 어떠한 의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문제 2.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에 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은 매체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헌재 결정 전과 결정 후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에 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의 차이는 어떠한가?

3.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1)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헌법재판 사건에 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다. 뉴스 보도의 내용과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주된 연구 방법으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채택했다. 그리고 헌법재판 보도 뉴스 기사에 대한 내용 분석을 질적인 차원과 계량적 차원, 이 두 차원을 병용하였다. 헌법재판 사건에 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의 의미 요소들을 내러티브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질적인 측면의 프레임 추출을 시행해야 하는 한편, 질적 분석으로 추출한 프레임 유형들의 분포가 헌재 결정 전과 결정 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계량적인 분석이 함께 요구됐기 때문이다.

분석 사례로 통진당 해산 헌법재판 사건에 관한 국내 주요 신문의 보도를 골랐다. 분석 대상 매체로는 종합 일간지 중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선정했다. 이 매체들은 매체 영향력이 상당한 동시에 차별적인 정체성을 대표하는 국내 주요 언론이다.

분석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헌재에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2013년 11월 5일부터 헌재가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에 대한 인용(찬성) 결정을 한 2014년 12월 19일 이후 2015년 1월 말까지의 기사들로 한정했다. 헌재 결정 이후 1달을 분석 시기에 포함한 이유는 헌재 결정 이후에도 약 1달간 헌재 결정과 그 사회적 파장에 관한 후속 보도가 집중적으로 전개되었고, 헌재 결정 전과 후 보도를 모두 분석하려는 이 연구의 목적을 고려했다.

뉴스 기사는 국내 언론사 기사 원문을 제공하는 '아이서퍼' 서비스를 통해 수집했다. 통진당 해산 청구 헌법재판 관련 기사들은 검색어로 '헌법재판소'와 '통합진보당'을 활용해

수집했다. 검색어를 활용해 일차로 수집한 기사들을 모두 검토해, 키워드는 포함하지만 헌법재판 사건과 그 내용 혹은 기사 의도가 전혀 동떨어져 연구 목적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기사는 제외했다. 관련성 여부는 일차로 코더들이 교차 확인하고, 연구자가 최종 검토했다. 그 결과 548건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 그리고 분석 대상 기사 중 보도 프레임이 현저하게 나타날 확률이 높은 의견 기사(사설 및 칼럼) 114건을 질적인 프레임 유형 추출에 활용했다. 이렇게 추출된 프레임 유형들을 활용해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계량적인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계량적인 보도 프레임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언론이 사실 기사에서 객관 저널리즘을 적용할 때라도 이를 형식적으로 적용할 뿐, 탈-객관화 전략을 활용한 주관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남재일, 2004)을 고려했다.

2) 분석 사례에 대한 이해

통진당 해산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헌재가 법무부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통진당을 합법적 절차를 통해 해산한 사건을 뜻한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사실상 최초의 정당 해산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헌법재판소, 2014).

통진당은 잦은 종북 논란과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당 운영으로 인해서 보수 세력은 물론이고 진보 세력으로부터도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오다가, 이른바 폭력 혁명과 내란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사건을 계기로 공개적인 정당 해산 위기에 몰렸다. 2014년 12월 헌재는 재판관 8명의 인용, 1명의 기각 의견을 토대로 통진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은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 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 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소수 의견(재판관 김이수)은 통진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일부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진당 전체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기 어려우며, 그 외에 통진당의 다른 활동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통진당 해산 인용을 반대했다.

통진당 해산 사건은 정당 해산을 둘러싼 학술적 논쟁에도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관한 논의는 통진당 해산 결정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임지봉, 2015)에서 출발하여 정당 해산 심판 제도(채진원, 2015)나 헌법재판의 역할에 관한 논의(김종철, 2015)로 확대되었다. 통진당 해산이 헌재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정당 해산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통진당의 정신이나 목적을 계승하거나 그와 유사한 정당 또는 정치 조직이 출현하는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다. 일부에서는 국가나 헌법 기관이 나서서 정당을 해산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21세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었다.

통진당 해산은 정치, 사법, 그리고 언론과 소통의 관계에서 또 다른 논의 과제를 제기했다.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에는 '정치적 판결'과 '법적 판결'의 두 측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는 언론과 사법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서도 연관을 맺는 쟁점이다. 통진당 해산 헌법재판 사건은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법학적 · 정치학적 논의는 물론이고 사법 현상에 대한 언론 보도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기 위한 분석 사례로도 적합하다고 보았다.

3) 연구 변인의 개념화와 조작적 정의

통진당 해산 헌법재판 사건에 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이 이 사건에 대해 제공하는 총체적 의미는 물론이고 그 의미 요소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엔트먼(Entman, 1993)의 프레임 개념에 근거해 보도 프레임의 유형과 그 의미 요소들을 추출하고자 했다. 엔트먼에 따르면, 프레임의 내용적 혹은 의미적 요소는 문제 정의(define problems), 원인 규명(diagnose causes), 도덕적 판단(moral judgements), 해결 방안 제시(suggest remedies)로 구성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프레임이 단일한 주장이나 서술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의 의미들의 연결 혹은 연관을 통해서 주조된다는 점을 반영한다.

엔트먼의 프레임 논의를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는 프레임을 각각의 이야기 요소들이 일련의 논리적 · 의미적 연관성을 갖고 연합됨으로써 뉴스가 보도하는 현실에 대해 생산하는 특정한 이야기 구조로 규정했다. 이야기 구조의 요소들은 '문제 정의', '원인과 이유', '도덕적 책임 평가', '해결책과 대안', '교훈과 전망'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원칙과 명분'을 추가했다. '문제 정의'는 언론이 보도하는 현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로 정의했다. '원인과 이유'는 사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 혹은 근거의 제시로 정의했다. '도덕적 책임 평가'는 도덕적 평가에 따른 사태의 책임 소재 규명 혹은 책임 지적으로 정의했다. '해결책과 대안'

은 사태 해결을 위해 언론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해결책이나 대안으로 정의했다. '교훈과 전망'은 사안의 해결이나 사태를 둘러싼 장단기 전망으로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원칙과 명분'은 언론이 사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언론 스스로의 해석을 정당화하는 요소로 정의했다.[4)]

4) 코딩 절차와 방법

다음 단계로 코딩 프로토콜을 구축했다. 그리고 자료를 분석할 코더를 선발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코더는 뉴스 내용 분석 경험이 있는 언론학 전공 대학원생 2인으로 구성했다.

두 단계의 절차를 활용하여 보도 프레임에 관한 자료를 수집 · 분석했다. 첫째, 우선 귀납적인 방식을 통해서 통진당 헌법재판 보도 프레임의 의미 요소들을 추출했다. 우선 각 코더들로 하여금 각 기사별로 프레임 요소에 해당하는 대표 진술문들을 개방형(open-ended) 응답 방식을 활용해 기입하도록 하였다. 수집한 진술문들을 우선 '문제 정의', '원인과 이유', '도덕적 책임 평가', '해결책과 대안', '교훈과 전망', 그리고 '원칙과 명분'별로 재분류했다. 그리고 프레임 요소별로 재분류된 진술문들을 서로 유사한 내용이나 의미를 갖는 것들끼리 묶어 갔다. 이러한 분류 과정의 반복을 통해 각 프레임 요소별로 가장 차별적인 의미를 갖는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각 진술문 유형들을 서로 교차하면서 각 요소 간에 논리적으로 연관된 의미로 조직된 특정 이야기로 통합 가능한 요소들을 묶어 보았다. 이를 통해 통진당 헌법재판 사건에 관한 보도 프레임의 여러 유형들을 5개의 내러티브로 구분되는 프레임 유형으로 추출했다.

둘째, 질적 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추출한 프레임 유형들을 보도 프레임의 조작적 정의를 위한 항목으로 활용하여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각 기사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프레임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특정 프레임이 현저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기사는 코딩하지 않았다. 계량적인 내용 분석 단계에서 최종 코더 간 신뢰도는 .87로, 분석에 별 무리가 없었다. 신뢰도 계수는 크리펜도르프(Krippendorf) 알파(α)를 활용했다.

---

4) 원칙 및 명분은 윤영철과 김경모(2009)의 논의를 참고하여 추가한 항목이다.

표 1. 표본 구성 단위: 건(백분율)

		매체별				전체
		조선	중앙	경향	한겨레	
전체 분석 기사 수	헌재 결정 전 기사	74(51.0)	44(48.9)	66(45.2)	84(50.3)	268(48.9)
	헌재 결정 후 기사	71(49.0)	46(51.1)	80(54.8)	83(49.7)	280(51.1)
	전체	145(100.0)	90(100.0)	146(100.0)	167(100.0)	548(100.0)
질적 분석 기사 수 (프레임 추출)	헌재 결정 전 기사	11(44.0)	8(47.1)	14(50.0)	19(43.2)	52(45.6)
	헌재 결정 후 기사	14(56.0)	9(52.9)	14(50.0)	25(56.8)	62(54.4)
	소계	25(100.0)	17(100.0)	28(100.0)	44(100.0)	114(100.0)
양적 분석 기사 수 (프레임 분포)	헌재 결정 전 기사	31(40.3)	19(41.3)	31(40.3)	36(40.9)	117(40.6)
	헌재 결정 후 기사	46(59.7)	27(58.7)	46(59.7)	52(59.1)	171(59.4)
	소계	77(100.0)	46(100.0)	77(100.0)	88(100.0)	288(100.0)

4. 분석 결과

1) 분석 대상 기사의 특성

분석 대상 기사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분석 기사는 548건이었으며, 질적 분석 기사는 114건, 계량적 내용 분석 기사는 288건이었다.[5] 헌재 결정 전후 기사 수는 전체 분석, 질적 분석, 계량적 분석 차원 모두에서 엇비슷하게 나타남으로써, 분석 시행에 별 무리가 없었다. 매체별로, 〈한겨레〉가 167건, 〈조선일보〉 145건, 〈경향신문〉 146건, 〈중앙일보〉 90건이었다. 질적 프레임 추출을 위한 의견 기사 수는 〈한겨레〉가 44건으로 다른 매체에 비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향신문〉 28건, 〈조선일보〉 25건, 〈중앙일보〉 17건 순으로 많았다.

2) 연구문제 1의 분석 결과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귀납적인 방식으로 '문제 정의', '원인과 이유', '도덕적 책임(평가)',

5) 질적 분석 기사 수와 양적 분석 기사 수를 합친 숫자가 전체 분석 기사 수와 다른 이유는 질적 분석을 토대로 계량적인 프레임 분석을 시행할 때, 특정 프레임이 드러나지 않는 기사들은 양적 분석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2.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 사건 보도 프레임와 의미 요소별 내용

프레임 / 요소	박근혜 정부 정치적 전략 프레임	종북·폭력 세력 축출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 프레임	민주주의 탄압 프레임	통합진보당과 진보 세력 자업자득 프레임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프레임
문제 정의	정치적 위기 탈출과 정국을 전환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정쟁 전략	종북·폭력 혁명 추구 세력에 위협받는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	북한에 적대적인 박근혜 정부의 반공주의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상황	통진당과 진보 세력 스스로 자초한 위기	정치권과 의회가 할 일이 헌재로 넘어와 헌재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게 된 상황
원인 · 이유	국정원 대선 개입 등의 국면을 돌파하고 보수 지지층 결집해야 할 정치적 국면과 선거 상황	폭력 혁명과 종북 노선을 추구하고, 당원의 일탈을 방기하는 반헌법적 통진당	박근혜 정권의 이념적 편향과 집착. 보수 세력의 이념 전쟁.	이석기 일파의 잘못된 행동과 당원 일탈을 방기하고 모호하게 처리한 통진당의 무능과 무책임	정치적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력과 비효율
도덕적 책임	집권 초기에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국면 전환에 나선 박근혜 정부	통진당을 비롯해 통진당과 연대하거나 통진당 연명에 도움을 주는 진보 세력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박근혜. 보수 세력과 반공 이념, '보수언론'	구태를 답습하고 정체됨으로써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멀어진 통진당 세력 자신	스스로 해결할 난제를 헌재로 들고 간 정치권과 정치적인 헌재
해결책 · 대안	정부의 통진당 해산 추진 철회. 재판 중단	헌법적 절차를 통한 정당 해산과 종북·폭력 세력의 실체 밝히기	관용과 다양성 보장, 정당 해산은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고, 재판을 중단해야. 민주주의 탄압에 대한 분노와 저항	새로운 진보 정당의 미래 건설. 북한 문제의 내부적 정리.	법률적 원칙을 지키는 헌재, 그리고 헌재(결정)에 대한 국민 비판과 감시. 헌법재판 제도 개선. 정치성 폭로.
교훈 · 전망	진보 세력 고립과 차단 구도 지속에 대한 우려. 향후 선거 국면의 혼란 지속	진보를 가장한 자유 민주주의 위협 세력을 인식하고,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하는 계기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경각. 민주주의 성숙의 계기	건강한 진보 세력을 재건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성	정치와 법의 관계를 고민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헌재의 사회 통합적 역할에 대한 고민.
원칙 · 명분	정부 통치의 합리성	자유 민주주의와 반공. 비폭력.	민주주의. 관용. 다양성.	유권자 눈높이. 상식적인 현실 인식.	사법의 공정성

'해결책과 대안', '교훈과 전망', '원칙과 명분'으로 구조화된 프레임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헌법재판 보도의 뉴스 프레임은 〈표 2〉와 같이 차별화된 내러티브를 제공하는 프레임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현저하게 발견되는 프레임은 다음의 5개 프레임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통진당 해산 헌법재판을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정략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박근혜 정부 정치 전략 프레임이다.[6] 둘째,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 혁명

6) 주요 대표 진술문: "박근혜 정부는 위기 국면을 벗어날 때마다 종북을 앞세운 이념 논쟁을 통해 보수 지지층을

을 추구하는 반헌법적 정치 세력에 해당하는 통진당을 헌법적 심판을 통해 축출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한다는 종북 · 폭력 세력 축출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 프레임[7]이다. 셋째, 통진당이 헌법재판의 심판을 받게 된 현실의 책임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낡은 정치 세력으로 전락한 통진당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통진당과 진보 세력 자업자득 프레임'이다.[8] 넷째, 통진당 해산 헌법재판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상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고 지지하는 민주주의 탄압 프레임[9]이다. 다섯 번째, 통진당 해산 헌법재판은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나타난 현상인 동시에 그에 따라 헌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점에 주목하지만, 헌법재판 제도의 한계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 이념적 편향 등 사법의 정치화된 성격[10]을 비판적으로 문제시하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프레임이다.[11] 이들 각각의 프레임

결집시키고 수세 국면을 공세적으로 전환했다", "2년간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흔들리는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정국을 얼려 버리는 것으로 잡은 듯하다", "2016년 총선과 다음 대선까지 고립과 차단의 구도가 계속될 수 있다", "세간에는 정부가 공안 정국 조성으로 국정원 위기를 돌파하고자 해산 심판 청구까지 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등.

7) 주요 대표 진술문: "국민에게 북한에 대한 느슨한 대응을 경계하는 알람벨 같은 것이며, 종북 세력에 울리는 경종이다", "민주노동당 시절은 물론, 창당 이후에도 북한에 대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반응을 보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의 전체주의를 숭상하는 세력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데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실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지 타격을 모의하는 이들이 어찌 한국의 진보 세력인가", "야당은 종북 세력과 확실히 절연하고 이들의 정치권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 "헌재는 이번 심판을 통해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도 헌법 질서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 줘야 한다", "자유를 파괴하기 위해 자유를 이용하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잊어선 안 된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 냈다", "헌재는 민주주의 적법 절차를 거쳐 통진당은 대한민국 파괴 세력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등.

8) 주요 대표 진술문: "대중과 괴리된 인식과 사고를 버리지 않는 한 진보정치는 환영받기 어렵다", "여하간 진보당의 일부 그룹은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극복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통진당은 헌법적 심판을 받고 있는데다 이번 선거로 정치적 심판까지 받았으니 스스로 파산 상태에 빠졌음을 적시해야…", "통합진보당도 종북주의 노선을 정비하고 발본적인 혁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정당 해산 결정 이전에 이미 소멸을 걱정할 만큼 여론으로부터 고립된 진보 정당의 현주소가 위기의 본질" 등.

9) 주요 대표 진술문: "박근혜 정권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시민적 합의로 만들고 지켜 온 소중한 가치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 것은 민주주의의 요청에 대한 정면 거부다", "헌재에 의한 최초의 정당 해산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적 오점이다", "민주주의 파괴의 주역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갈등과 통합의 기로에 선 민주주의가 갈 길을 정하는 역사적 임무는 이제 시민의 몫이 됐다", "선거 등 정치적 과정을 통한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관용과 다원성을 본질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대응 방식이다" 등.

10) 정치의 사법화와 연관된 현상으로 사법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동기에 의해 작동한다는 현상을 뜻하는 사법의 정치화 문제를 지칭한다.

11) 대표 진술문: "헌법재판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해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이 선출한 의원직을

들이 각각의 내러티브로서 사건에 대한 어떠한 의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표 2〉에 상세히 제시하였다.

통진당 해산 헌법재판에 관한 보도 프레임의 지형은 몇 가지 특징을 띠는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 각 프레임들이 법률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인 차원의 해석적 토대 위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의미 해석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해석적 공동체로서 한국 언론이 정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헌법적 분쟁을 정치적 대결 혹은 이념적 대결 구도의 준거를 갖고 그에 대한 언론의 해석적 담론을 생산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거꾸로 보자면, 언론들이 이 사건에 대한 의미 해석을 사법 혹은 법치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내러티브는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언론은 헌법재판 이슈에 대한 '정치화된 내러티브'를 제공하는 데에 경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통진당 헌법재판 보도 프레임의 전체 지형상 특징은 또한 보도 프레임이 사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서로 대립하는 구도로 짜여 있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적 분쟁에 관한 언론의 상징적 현실 해석의 관심과 초점이 헌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측면보다는 헌재 결정(재판 판결)의 향배에 더 편중되어 있음을 뜻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물론 추가적인 다른 헌법재판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보도 프레이밍의 이러한 성격을 통해 집합적 수준에서 한국 언론들이 사법을 '결과' 중심으로 접근하는 담론 문화를 논의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각 프레임들은 정당 해산 논의의 근저에 '민주주의', '자유' 등 깔려 있는 특정 가치들을 프레임을 정당화하는 원칙과 명분의 이야기 요소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들을 상이한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정의하여 프레임 경쟁에 활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는 곧 언론이 헌법적 분쟁 과정에 대한 해석적 담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언론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공유된 가치나 윤리-정치적 인식을 토대로 하는 담론 경쟁을 벌이고 있

사법 기관인 헌재가 박탈할 수 있는가라는 깊은 성찰은 발견할 수 없었다", "탄핵 소추와 행정수도 심판에 이어 이번 해산 결정도 헌재의 정치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정치도 법도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는 이 땅의 미래는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 "헌재가 소수파를 보호하는 대신 강자 중의 강자인 공안파적 시각을 아주 강하게 드러냈어요", "하지만 지켜야 할 민주주의가 헌법으로 물신화되며 헌재가 수호자로 등장하면 민주화의 주체인 대중으로부터도 민주주의는 격리된다", "대통령 탄핵과 행정수도 사건 등을 맡으면서 헌재의 정치적 중요성이 극대화 되었고…", "획일적이고 보수적인 재판관 구성은 오히려 헌법의 근간인 다양성의 훼손을 낳고 있다", "정치권이 정치적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헌법재판도 정쟁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를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밀어붙인 것 자체가…" 등.

다기보다, 특정 가치에 대한 분열된 의미를 프레임에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의 담론 경쟁을 더욱 더 분열된 구도로 몰아가는 효과에 기여할 가능성을 설명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언론들이 헌법적 분쟁에 대한 상징적 내러티브를 '정치적인 언어'에만 심각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현실 해석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분열된 언어 의미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법률 장 내에서 그 나름의 합리성과 공유된 의미로 존재하는 법률적 언어들에 의존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정치의 사법화…' 프레임을 제외하면, 그러한 언어들은 거의 동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3) 연구문제 2의 분석 결과

통진당 해산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이 각각의 프레임별로 어떠한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적으로, '종북 · 폭력 세력 축출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 프레임이 2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민주주의 탄압' 프레임이 25.3%로 높았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프레임'이 16.0%, '통진당의 자업자득' 프레임이 15.6%, '박근혜 정부의 정치 전략 프레임' 13.5% 순으로 높았다.

매체 간 분포를 보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공통적으로 '종북 · 폭력 세력 축출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 프레임'을, '통진당과 진보 세력 자업자득 프레임'을 지배적으로 채택하고 있었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거나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내러티브를 제공

표 3. 보도 프레임 분포 **단위: 백분율(건)**

	매체별				전체
	조선	중앙	경향	한겨레	
박근혜 정부 정치 전략 프레임	2.6	6.5	23.4	18.2	13.5
종북·폭력 세력 축출 · 자유 민주주의 수호 프레임	67.5	50.0	5.2	1.1	27.8
민주주의 탄압 프레임	3.9	6.5	36.4	44.5	25.3
통진당과 진보 세력 자업자득 프레임	24.7	26.1	10.4	6.8	15.6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프레임	1.3	10.9	20.8	27.3	16.0
기타 프레임	0.0	0.0	3.9	2.3	1.8
전체	100.0 (77)	100.0 (46)	100.0 (77)	100.0 (88)	100.0 (288)

$\chi^2 = 177.193$, $df = 15$, $p < .001$.

하는 프레임 채택 비중은 매우 낮았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 정치 전략 프레임', '민주주의 탄압 프레임'을 지배적으로 채택하는 한편, 통진당 해산을 긍정하거나 지지하는 현실 해석의 틀은 매우 낮은 비중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매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 < .001$).

매체 내 분포의 경우, 〈조선일보〉는 '종북 · 폭력 세력 축출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 프레임'이 67.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통진당과 진보 세력 자업자득 프레임'이 2.7%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에서 그 외의 프레임은 거의 미미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조선일보〉와 유사하게 '종북 · 폭력 세력 축출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 프레임'(50.0%), '통진당과 진보 세력 자업자득 프레임'(226.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프레임'(10.9%), '박근혜 정부 정치 전략 프레임'(6.5%)은 〈조선일보〉에 비해 그 비중이 각각 더 높았다. 〈중앙일보〉의 프레임 분포는 〈조선일보〉와 비교했을 때 프레임 구성은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통진당 해산 헌법재판 사건을 더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의미를 담은 프레임 채택 비중도 더 높았다. 〈경향신문〉의 경우, '민주주의 탄압 프레임'(36.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박근혜 정부 정치 전략 프레임'(23.4%),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프레임'(20.%)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한겨레〉 또한 〈경향신문〉과 유사하게 '민주주의 탄압 프레임'(44.5%),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프레임'(27.3%), '박근혜 정부 정치 전략 프레임'(18.2%)이 지배적인 프레임으로 나타났다.

프레임 유형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우선 언론의 프레임 관행이 각 정파 언론이 각자 이 사안을 해석하는 관점과 입장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이념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작동했음을 드러낸다. '종북 · 폭력 세력 축출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 프레임'은 '보수언론'이 해당 사안을 해석하는 관점을, 그리고 '민주주의 탄압 프레임'은 진보언론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극명히 반영한다. 이러한 프레임들은 각각 정치 병행성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집권 세력과 정부 여당'과 '소수 진보언론과 진보 세력'을 각각 대변한다. 분석 대상 언론들은 자신들의 정파적 동기와 이해관계 측면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틀짓기 관행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러한 틀짓기 관행은 정파적으로 적대적인 프레임 경쟁 혹은 대립 구도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신문의 정파성은 헌법재판 차원의 사법 결정에 대해서조차 사회 통합적 역할보다 담론 분열을 조장하고, 그럼으로써 헌법적 문제 해결의 정치적 과정 속에서 적대적인 사회 갈등을 확대 · 재생산하는 담론적 행위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 사건을 단지 정파적 대결 구도 안에서 의미화하는 언론의 해석적

실천 말고도 법률적 차원 혹은 법치주의(legalism) 부상에 관계된 측면에서 해석하는 프레임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프레임이 근거다. 이 프레임을 채택한 기사들은 대체로 정당 활동에 대한 사법 제재에 비판적인 '진보언론' 쪽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되었다.[12] 현재 다뤄지는 헌법적 사안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언론일수록 사법 제도와 시스템 그 자체, 혹은 사법 기관의 역할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언론이 정치의 사법화를 문제시하는 동기 혹은 맥락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언론의 논조 및 이해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제시하는 틀짓기 관행이 나타나는 양상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연구문제 3의 분석 결과

통진당 헌법재판 보도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전후에 따른 프레임 분포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정 전 시기 보도의 경우, 민주주의 탄압 프레임이 33.3%로 가장 높았지만, 그다음으로 높았던 종북 · 폭력 세력 축출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 프레임 32.5%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는 박근혜 정부 정치 전략 프레임이 18.9%,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프레임 9.4%, 통진당의 자업자득 프레임 4.3% 순으로 나타났다. 결정 후 보도의 경우, 가장 비중이 높은 프레임은 종북 · 폭력 세력 축출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 프레임(24.6%)이었지만, 통진당의 자업자득 프레임(23.4%) 비중과 거의 비슷했다. 다음으로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프레임 20.5%, 민주주의 탄압 프레임 19.9%, 박근혜 정부 정치 전략 프레임 9.9% 순으로 나타났다. 헌재 결정 전후 프레임 유형별 비중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

12) 주요 기사들: 조선의 경우 〈통진당 심판으로 다시 관심 초점 된 헌재〉가 대표 사례. 중앙의 경우, 〈대화 · 타협 없이 무조건 헌재로 달려가니〉, 〈갈수록 세지는 헌재… 여야, 정치 쟁점 들고 자꾸 달려가〉, 〈헌재의 구성, 강한 권한 고려할 때 다양해져야〉, 〈9인의 헌법재판관 여러분께〉 등. 〈한겨레〉의 경우, 〈국회의원직 박탈 결정, 헌재의 월권이자 모순〉, 〈헌재, 이대로 둘 것인가〉, 〈헌재의 지역구 국회의원직 박탈은 타당한가?〉, 〈여당, 정치적 민감 현안 떠넘기기 보수편향 헌재 '해결사' 될판〉, 〈민주화로 태어난 헌재, 기득권 수호 첨병으로〉, 〈헌법재판소의 오래된 월권〉, 〈법치주의 이름으로 헌법을 매장한 헌재〉, 〈헌재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등. 〈경향신문〉의 경우, 〈대법 · 헌재, 최고 사법기관 지위 놓고 '자존심 대결'〉, 〈노무현 대통령 탄핵 · 행정수도 이전 이어 다시 '정치적 문제' 중심에… 헌재 부담〉, 〈1987년 8월21일 여야, 헌법재판소 설치 합의〉, 〈헌정 초유의 '정당해산' 청구… 정당정치 근간 침해 우려〉, 〈헌법 ·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8 대 1' 헌재 체제〉 등.

표 4. 헌재 결정 전후 보도 프레임 변화 **단위: 백분율(건)**

	헌재 결정 전					헌재 결정 후					전체
	조선	중앙	경향	한겨레	전체	조선	중앙	경향	한겨레	전체	
박근혜 정부 정치 전략 프레임	3.2	15.8	25.8	27.8	18.9	2.2	0.0	21.7	11.5	9.9	13.5 (39)
종북·폭력 세력 축출 자유 민주주의 수호 프레임	83.9	57.9	3.2	0.0	32.5	56.5	44.4	6.5	1.9	24.6	27.8 (80)
민주주의 탄압 프레임	3.2	10.5	51.6	55.6	33.3	4.3	3.7	26.1	36.5	19.9	25.3 (73)
통진당과 진보 세력 자업자득 프레임	6.5	5.3	6.5	0.0	4.3	37.0	40.7	13.0	11.5	23.4	15.6 (45)
정치의 사법화 및 사법의 정치화 프레임	3.2	10.5	12.9	11.1	9.4	0.0	11.1	26.1	38.5	20.5	16.0 (46)
기타 프레임	0.0	0.0	0.0	5.6	1.7	0.0	0.0	6.5	0.0	1.8	1.7 (5)
전체	100.0 (31)	100.0 (19)	100.0 (31)	100.0 (36)	100.0 (117)	100.0 (46)	100.0 (27)	100.0 (46)	100.0 (52)	100.0 (171)	100.0 (288)

주1: 헌재 결정 전후별 * 프레임 교차 검증 (n = 288) $\chi^2 = 32.132$, $df = 5$, $p < .001$.
주2: 헌재 결정 전 기사 매체별 * 프레임 교차 검증 (n = 117) $\chi^2 = 83.697$, $df = 15$, $p < .001$.
주3: 헌재 결정 후 매체별 * 프레임 교차 검증 (n = 171) $\chi^2 = 109.734$, $df = 15$, $p < .001$.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리고 결정 전 보도에서 매체 간 프레임 분포 차이는 물론이고 결정 후 보도에서 매체 간 프레임 분포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헌재 결정 전후를 비교했을 때, 박근혜 정부 정치 전략 프레임은 18.9%에서 9.9%로 그 비중이 절반 정도 감소했다. 종북 · 폭력 세력 축출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 프레임은 32.5%에서 24.6%로 감소했다. 민주주의 탄압 프레임 또한 33.3.%에서 19.9%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통진당의 자업자득 프레임은 4.3%에서 23.5%로 크게 상승했으며,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프레임 또한 9.4%에서 20.5%로 두 배 이상 비중이 늘었다.

통진당 해산을 지지하거나 우호적이었던 '보수언론'이 주로 채택한 프레임 비중은 48.0%(24.6% + 23.4%)인 반면, 그에 반대했던 '진보언론'이 주로 채택한 프레임 비중은 40.4%(19.9% + 20.5%)로, 보수언론이 채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이 더 많은 비중을 보였다. 주목할 부분은 각 정파 언론이 정치적 입장과 이념적 이해관계에 따라 채택하는 프레임이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한 프레임이 현저하게 반영되어 있는 기사 비중이 헌재 결정 전(117건)에 비해 결정 후(171건)에 더 높아

진 점과 연관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은 현실에 대한 특정한 의미를 반영하는 기사를 결정 이후 더 적극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자신들의 정파적 현실 해석에 입각한 뉴스 현실을 한층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이 헌재 결정 전에 비해 결정 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특정한 의미를 구성하는 틀짓기 전략을 강화했음을 뜻한다. 언론이 적어도 헌재 결정 전까지 부분적으로나마 작동시켰던 객관 저널리즘 전략이 헌재 결정 후에는 덜 반영되거나 억제되었음을 추론케 한다. 반면, 결정 이후 언론은 헌재 결정과 그 파장이 자신이 지지하거나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사법적 현실에 대한 해석적 노력의 정도를 선택적으로 강화했음을 추측하게 한다.

프레임 유형별 채택 분포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조금 더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결정 전과 결정 후에 각 언론들은 자신들의 정파적 관점에 입각한 현실 해석의 틀을 지배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유사했다. 하지만 언론이 틀짓기한 내용이 특정 프레임에 집중되어 있기보다 다양한 프레임을 채택하고 있는지 프레임 분포의 측면을 살펴보면, 헌재 결정 전에 비해 결정 후에 언론의 프레임 집중도(concentration ratio)는 낮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13] 언론은 헌재 결정 이후에 사법 현실에 대한 자신들의 정파적 현실 해석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더 다면적인 프레임 전략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헌재 결정 이전에는 '종북 · 폭력 세력 축출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 프레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프레임 전략을 보였지만, 헌재 결정 이후에는 '종북 · 폭력 세력 축출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 프레임' 이외에도 '통진당과 진보 세력 자업자득 프레임'을 병행 채택함으로써 복합적인 프레임 전략을 활용해 헌재 결정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지지하는 뉴스 현실을 구축한 것으로 추측된다. 헌법재판 보도에서 언론의 프레임 전략은 헌재 결정 전과 결정 후에 단순히 정파적 동기에 의한 양적 분포의 변동으로 설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재 결정 이후에 사법에 대한 언론 자신의 현실 해석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의 상호 지지적인(mutually supportive) 의미로 연관되는 프레임들을 동원하는 복합적 프레임

13) 연구문제에 포함된 분석은 아니지만, 상위 3개 프레임 집중률을 계산한 결과, 결정 전에 비해 결정 후에 '프레임 집중도'는 더 낮았다. 매체별로 상위 3개 프레임 집중률을 분석한 결과의 경우, 〈조선일보〉를 제외한 모든 언론에서 프레임 집중률은 결정 전에 비해 결정 후에 더 낮아졌다. 프레임 집중률은 상위 3개 비중을 차지하는 프레임의 비중(점유율)을 제곱하여 합산한 방식($CR_k = \sum_{i=1}^{k} S_i^2$ k = 상위 프레임 수)으로 계산했다.

전략을 채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단, 이 점은 단순히 언론의 독자적인 프레이밍 실천의 결과라기보다 헌재 결정 후 정치권과 시민 사회로부터 '통진당 책임론'이 제기된 현실에서 언론이 새로운 프레임 구성을 시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5. 결론과 함의

이 연구는 한국 언론이 정치적인 동시에 법적인 논쟁을 야기하는 헌법재판 사건을 어떻게 의미화하여 특정한 내러티브적 틀로 재구성하는지, 그리고 언론의 보도 프레임이 헌재 결정 전과 후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언론의 의미 구성의 내용과 효과를 내러티브 프레임 차원에서 상세히 밝히고,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과 언론 보도의 기능과 효과를 경험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재판에 관한 언론 보도의 기능과 문제점을 토의해 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는 언론들이 헌법재판 이슈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이념적 대결 구도하에서 상호 대결하는 내러티브를 구조화된 프레임으로 제공하고, 더 나아가 언론의 이러한 보도 관행이 헌재 결정 전에 비해 결정 후에 더욱 강화(reinforcement)된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차적으로는 헌법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의 의미 구성 과정을 매체 간 정파적인 담론 경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해석적 공동체로서 언론들이 사법 현실에 대한 해석적 준거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동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사법적 차원의 의미를 포착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능 면에서 취약한 저널리즘의 단면을 드러낸다.

최근의 경험적 사례들을 보면 헌법재판이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 가는 측면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헌법재판이 정치 그 자체와 동일하지는 않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문제를 사법적 수단과 원칙에 입각해 풀어 가는 시스템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부에 의한 의사 결정이 갖는 정치적 효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는 학술적으로나 대중적으로 비상한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우려되는 지점은 최근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엿보이듯 사법에 의해 사회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더 큰 갈등과 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있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법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 한편, 사회 각 영역에서도 법치주의를 한국 사회 운영의 주된 원리로 받아들여 가

는 성숙한 시민 사회 문화가 요청된다. 이 맥락에서 언론은 자신들의 당파적 관점의 '올바름'[14]에 입각해 헌법재판 사건을 이념적 의미와 가치로 적대화된 상징적 현실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과연 '좋은'[15] 행위인지를 성찰할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 특히 언론은 헌법재판에 회부된 사안이 이미 정치적 해결의 실패를 맛본 갈등이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언론은 오로지 이념적 · 정파적 관점 안에만 안주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제기해 본다.

언론은 정파적 이념 대결이나 담론 투쟁의 경향에서 한발 물러서 헌법과 법치의 견지에서 중대한 사법적 사건을 바라보고 의미화하는 해석적 노력에 어느 정도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노력은 사법을 둘러싼 공적 숙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언론이 사법의 논리와 법치의 맥락에서 해당 사건이 갖는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에 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설령 언론의 입장이 서로 반대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용자 입장에서는 "왜 사법부가 저러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지/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의 측면에서 사안을 숙고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설령 사법부 결정에 대해 찬반 논리가 갈려진다 하더라도, 법치와 법률적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대립하는 여론 지형은 정파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입장 차이로 사법부 판결 앞에서 대립하는 여론 지형과는 다를 것이다.

헌법재판 보도에서의 공정성이나 (의견) 다양성과 같은 규범적 기준들에 대한 논의도 달리 접근할 수 있다. 가령, 재판 보도에서 공정성은 단지 다양한 의견들 사이의 균형성이나 중립성 측면에서 분석 ·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의견 다양성'이 오로지 당파적인 입장과 관점들만의 다양성으로 충족되고 있다면, 그러한 다양성은 사법적 문제의식과 정치적 문제의식 간의 균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다양성 충족의 실패를 뜻하게 된다. 사법적 사안에 대한 저널리즘 규범에 관한 논의는 따라서 사법의 정치적 의미 대 사법의 법률적 의미로 대비되는 차원/축을 중심에 놓고 재검토할 필요 또한 있다.

언론은 특정 집단이 법에 대해 요구하는 가치와 이해관계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둘 수 있다. 이는 시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매개하는 정치적 공론장으로서의 언론의 규범적 역할에 포함되기도 한다. 정치화된 사법 보도나 정파적 사법 보도가 덮어놓고 비판받을 일만은 아닌 셈이다. 그러나 사법에 대한 언론의 해석적 틀이 정치적인 차원의 해석적 실천과 사법적 차원의 해석적 실천 사이에서 현저하게 균형성을 잃고 있다면, 언론 보도는 민주주

---

14) 여기서 '올바름'이란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 말하는 권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15) 여기서 '좋은'이란 공동체주의 정치철학에서 말하는 공동선으로서의 '좋음'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의와 법치주의의 조화와 균형에 기여하기보다 이데올로기적 대결 구도로 사법 시스템을 몰아세우거나 당파적으로 대립하는 일시적 여론에 사법을 굴복시키는 역할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언론이 사법적 차원에서 보도 현실이 갖는 의미를 포착하여 프레이밍하는 실천이 없지는 않았다. 헌법재판 사건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사법의 위상 변화에 관한 맥락을 포착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프레임'이 그 근거다. 그렇기에 언론이 사법 현실에 대해 오직 정파적 현실 해석과 의미 구축만 시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의 사법화'에 주목하는 프레이밍 실천은 통진당 해산에 우호적인 언론에 비해 부정적인 언론에서 더 현저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문제 제기 또한 언론의 정파적 동기나 재판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처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작동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연구는 사법에 관한 공적 숙의의 필요성과 언론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던진다. 하버마스(J. Habermas)의 시각을 빌리자면, 정치와 사법은 현대 사회에서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 영역이다. 그렇다면 그 둘 사이의 불협화음을 조정하는 매개적 영역이 요구된다. 그 가능성은 미디어와 소통의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주주의와 사법 각각의 내적 한계가 접합되는 최근만 봐도, 사법에 대한 합리적 여론 형성과 언론 보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디지털 시대에서 더욱 중요하다. 사법 영역은 자신들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미디어와 여론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로웠지만,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며 사법은 더 이상 사상의 자유 시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와 아쉬움을 갖는다. 첫째, 이 연구는 어째서 헌법재판에 대한 언론의 상징적 현실 해석이 정파적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이 연구가 뉴스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연구자는 그러한 원인을 사법 시스템이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갖는 근본적인 특성에 부분적으로 기인할 수 있다고 추측해 보았다. 법원은 거의 모든 경우 판결을 통해서 갈등과 분쟁을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구속력을 발휘하지만, 그렇다고 재판 당사자들이나 여론이 모두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거나, 판결 이후에도 정치적 대응을 모색할 가능성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의 정파성이 바로 그러한 정치적 실천들과 공명해 가는 과정에 대한 학술적 분석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매체 간 프레임 차이 및 헌재 결정 전후(시기)별 프레임 차이를 분석했지만, 결과 해석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 측면에서 미흡함이 있었고, 양적 분석 결과의 기술에 그친 측면이 있다. 셋째, 이 연구는 헌법재판을 저널리즘의 각도에서 분석함으로써 법과 저널리즘의 관계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그 나름의 참신성이 있지만, 기존에 반복되어 왔던 프레임 분석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참신한 변인과 분석 틀을 활용하여 법과 저널리즘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 문헌

김경모 · 정은령 (2012). 내러티브 프레임과 해석 공동체: '전작권 환수 논란'의 프레임 경쟁과 해석 집단의 저널리즘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7호, 109-136.

김동윤 · 김성해 · 유용민 (2013). 의견지면을 통해 본 한국 신문의 정파성 지형: 공정한 중재자인가, 편파적 대변자인가. 〈언론과학연구〉, 13권 3호, 75-122.

김명수 (2011). 헌법재판의 기능과 권력분립. 〈공공사회연구〉, 1권 1호, 1-45.

김수정 · 정연구 (2010). 프레임 분석에 있어서 무보도 현상의 적용 효과 연구: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판결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2호, 382-404.

김승대 (2008). 헌법재판과 정책결정: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적극적 헌법심사의 이론적 모색. 〈법학연구〉, 48권 2호, 1-32.

김종철 (2005).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 노무현 정부 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33권 3호, 229-251.

김종철 (2015). 헌법재판소는 주권적 수임기관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저스티스〉, 통권 151호, 29-71.

남재일 (2004). 〈한국신문의 객관주의의 아비투스: 형식적 사실주의의 전략적 의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은정 (2010).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법학〉(서울대학교), 51권 1호, 1-26.

박종보 (2010). 사회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선거운동 규제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121호, 211-229.

신평 (2010). 판결에 대한 언론비평 자유의 한계. 〈언론중재〉, 통권 117호, 29-43.

심석태 (2014a). 판결에 대한 비판,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관훈저널〉, 통권 131호, 1-30.

심석태 (2014b). 언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법부: 언론의 판결비판보도와 사법부의 언론자유 인식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13권 2호, 1-30.

오승용 (2009). 민주화 이후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연구. 〈기억과 전망〉, 통권 20호, 282-314.

윤영철 (2000). 권력이동과 신문의 대북정책 보도: 신문과 정당의 병행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통권 27호, 48-81.

이광범 (2001). 재판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 방안. 〈언론중재〉, 통권 79호, 45-60.

이범준 (2014). 재판의 역할, 보도의 목적. 〈관훈저널〉, 통권 131호, 109-115.

임지봉 (2015).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법학논총〉, 통권 33호, 369-387.

장수영 · 이덕환 (2015).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고양: 사법정책연구원.

장진호 (2015). 〈헌법재판과 한국 민주주의〉. 파주: 한국학술정보.

조항제 (2014).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 · 언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2호, 41-76.

채진원 (2011). 한국에서 분점정부와 정치의 사법화 현상의 상관성. 〈국가전략〉, 17권 3호, 175-200.

채진원 (2015). 정당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공화주의적 방어: 독일과 한국의 위헌정당해산 비교논의. 〈한국정치학회보〉, 49권 4호, 241-266.

최선욱 · 유홍식 (2010). 공영방송 사장 해임 뉴스보도에 나타난 프레임 분석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2호, 69-89.

한위수 (2007). 〈재판실무연구(1) 언론관계소송〉. 서울: 한국사법행정학회.

헌법재판소 결정 2013헌다1(2014. 12. 19).

Baird, V. A., & Gangl, A. (2006). Shattering the myth of legality. *Political Psychology, 27*(4), 597-614.

Boykoff, M. T., & Boykoff, J. M. (2007). Climate change and journalistic norms: A case-study of U.S. mass media coverage. *Geoforum, 38*(6), 1190-1204.

Coffey, K. (2010). *Spinning the law: Trying cases in the court of public opinion.* NY: Prometheus Books.

Davis, R. (1987). Lifting the shroud: News media portrayal of the U.S. supreme court. *Communications and the Law, 9*(5), 43-59.

Davis, R. (1994). *Decisions and images: The supreme court and the pres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Davis, R. (2011). *Justices and journalists: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media.*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vis, R. (2014). *Covering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the digital age.*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Drechsel, R., Netteburg, K., & Aborisade, B. (1980). Community size and newspaper reporting of local courts. *Journalism Quarterly, 57*, 71-78.

Entman, R. M., & Paletz, D. L. (1980). Media and the conservative myth. *Journal of Communication, 30*(4), 154-165.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s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Ettema, J. (2005). Crafting cultural resonance: Imaginative power in everyday journalism. *Journalism, 6*, 131-152.

Ferejohn, J. (2002). Judicializing politics politicizing Law.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65*(3), 41-68.

Gamson, W., & Modigliani, A. (1987). The changing culture of affirmative action. *Research in Political Sociology, 3*, 137-177.

Genn, H. (1999). *Paths to justice: What people do and think about going to law.* Oxford, UK:

Hart Publishing.

Gibson, J. L., & Caldeira, G. A. (2011). Has legal realism damaged the legitimacy of the U.S. Supreme court?. *Law and Society Review, 45*(1), 195-219.

Gibson, J. L., Lodge, M., & Woodson,, B. (2012, 7). *Judicial symbols and the link between institutional legitimacy and acquiescenc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12 annual meeting, New Orleans.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raber, D. (2010). *Mass media and American politics* (8th ed.). Washington, DC: CQ Press.

Greenhouse, L. (1996). Telling the court's story: Justice and journalism at the supreme court. *Yale Law Journal, 105*, 1537-1539.

Grey, D. L. (1968). *The supreme court and the news media*.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Hallin, D. C. (1986). *The uncensored war: The media and Vietnam*.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Hans, V. P., & Dee, J. L. (1991). Media coverage of law: Its impact on juries and the public.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5*, 136-149.

Hirschl, R. (2002). Resituating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Bush v. Gore as a global trend. *Canadian Journal of Law and Jurisprudence, 15*(2), 191-218.

Jamieson, K. H., & Waldman, P. (2004). *The press effect: Politicians, journalists, and the stories that shape the political world*.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Jamieson, P. W. (1998). Lost in translation: Civic journalism's applicability to newspaper coverage of the U.S. supreme court. *Communication and the Law, 20*, 1-36.

Johnson, T., & Socker, E. (2008). *Media coverage and public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Paper resented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

Johnson-Cartee, K. S. (2005). *News narratives and news framing: Constructing political reality*.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ing, Inc.

Luberda, R. (2008). The fourth branch of the government: Evaluating the media's role in overseeing the independent judiciary. [On-Line]. *Online Journal of Notre Dame Journal of Law, Ethics & Public Policy, 22*(2), 507-532. Retrieved from http://scholarship.law.nd.edu/ndjlepp/vol22/iss2/11

Nicholson, S. P., & Howard, R. M. (2003). Framing support for the supreme court in the aftermath of Bush v. Gore. *The Journal of Politics, 65*, 676-695.

Page, B. I., & Shapiro, R. Y. (1992). *The rational public: Fifty years of trends in Americans' policy preferenc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tto, A. L., Penrod, S. D., & Dexter, H. R. (1994). The biasing impact of pretrial publicity on juror judgements. *Law and Human Behavior, 18*, 453-469.

O'brien, T. (1983). Yes, But.... *Judicature, 67*, 12.

Reese, S., Gandy, Jr., O., & Grant, A. (2001). *Framing pub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Mahwah, NJ: Lawrence Erldbaum.

Rosanvallon, P. (2008). *Counter-democracy: Politics in an age of distrust.* (A. Glodhammer, Tra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06).

Scheufele, D.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 103-122.

Schudson, M. (2011). *The sociology of news* (2nd ed.). New York, NY: W. W. Norton.

Slotnick E. E. (1991). Media coverage of supreme court decision making: Problems and prospects. *Judicature, 75*, 128-142.

Slotnick, E. E., & Segal, J. A. (1998). *Television news and the supreme court: All the news that's fit to air?.*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Spill, R. L., & Oxley, Z. M. (2003). Philosopher Kings or political actors: How the media portray the supreme court. *Judicature, 87,* 22-29.

Solberg, R. S., & Waltenburg, E. N. (2015). *The media, the court, and the misrepresentation: The new myth of the court.* New York & London: Routledge.

Soroka, S. N. (2012). The gatekeeping function: Distributions of information in media and the real world. *Journal of Politics, 74*(2), 514-528.

Van Dijk, T. A. (1988). *News as discours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Vining, Jr. R., & Marcin, P. (2014). Explaining intermedia coverage of supreme court decisions. In R. Davis (Ed.), *Covering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the digital age* (pp. 89-125)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Zaller, J. R.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최초 투고일 2017년 2월 7일
게재 확정일 2017년 3월 10일
논문 수정일 2017년 3월 24일

Abstract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News Framing

Analysis on the News Coverage of the Case on the Dissolution of Unified Progressive Party

Yongmin Ryu
Researcher, Communication Research Institute of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mainstream newspapers narratively frame the case on the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Case No.2013 Hun-Da 1) and examine the meaning of the differences in diverse news frames depending on the temporal factor of pre- and post-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background of this attempt comes from the emerging socio-political situation of the increasingly expanding function and role of jurisdiction or rule by law. The result indicates that newspapers produce factionally polarized and antagonistically contesting narratives and symbolic meanings about the UPP case depending on their partisan and ideological motivation and interest. This research provides the discussion on the discursive influence shaped by the framing practice of news media, regarding triangular relation among jurisdiction/law, journalism and public opinion.

Keyword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framing, jurisdiction, legal decision-making, court reporting